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3
----------	--------

제안일자 : 2018. 12. 17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20조제5항의 조문 자구를 정리하고, 상위법령에 있는 부칙 적용례를 조례에도 규정하여 시민의 조례 이용 편리성을 증대시키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0조제5항 중 “25퍼센트 이상”을 “25퍼센트”로 하고,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,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·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함(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).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제5항 중 “25퍼센트 이상을”을 “25퍼센트를”로 하고,  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·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0조(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)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"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20조(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"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"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,000세대 이상인 경우 2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20조(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25퍼센트를 -----.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·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</p>
<p>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

##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“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,000세대 이상인 경우 25퍼센트를 말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·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20조(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영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“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,000세대 이상인 경우 25퍼센트를 말한다.</u>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